

가점 대상 구분 및 관계 법령

구분	관계 법령 및 대상자
취업지원대상자	※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 * 증명서상 기재된 취업 가점 비율을 적용
장애인	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
비수도권 지역인재	•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* 붙임3 비수도권 지역인재 참고
경력단절여성	•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따라 임신·출산·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,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*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에 따라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인 경우
저소득층	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 및 제10호 등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북한이탈주민	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
다문화가족	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
자립준비청년	•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 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